

헌	행	개	정
읍 지휘 감독한다.			
제5조(공무원) <u>관리소</u> 에 소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		제5조(공무원) <u>사업소</u>	
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			
제6조(생략)		제6조(헌행과 같음)	

부천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93년 11월 24일
- 나. 제안자 : 부 천 시 장
- 다. 회부일자 : 93년 11월 24일
- 라. 상정일자 : 93년 11월 26일 (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 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시정과장 김충신)

가. 제안이유

- 내무부 지기 12200-555(93.10.28) 및 경기도지방 12200-2860(93.11.6)호와 관련
- 환경시설을 관리하는 사업소의 명칭을 변경시켜 사업소 명칭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(사업소 명칭 변경)

- 하수종말처리사업소 ————— 수질환경사업소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없	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 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8. 체계적 심사내용

○ 없 음

부천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215
의 결	93. 12. 6
년 월 일	(제25회)

제출년월일 : 1993. 11. 24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1. 제안사유

○ 내무부 지기 12200-555(93.10.28) 및 경기도지방 12200-2860(93.11.6)호와 관련

- 환경시설을 관리하는 사업소의 명칭을 변경시켜 사업소 명칭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(사업소 명칭변경)

- 하수종말처리사업소 ————— 수질환경사업소

부천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부천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”를 “부천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”로 한다.

제1조(설치)중 “부천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”를 “부천시수질환경사업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 문 대 비 표

현	행	개	정
제 명		제 명	
<u>부천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</u>		<u>부천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</u>	
제1조(설치) 시민의 보건향상과 분뇨 및 하수		제1조(설치)	
의 위생적 종말처리를 위하여 <u>부천시하수</u>		 (부천시	
<u>종말처리사업소</u> (이하 “사업소”라 한다)를 둔		<u>수질환경사업소</u>	
다.			
제2조내지제6조(생략)		제2조내지제6조(현행과 같음)	